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2026.9.21.(월) 10:00	배포	2026.9.18.(금)	
담당부서	금융투자검사1국 증권기획조정팀	책임자	국 장	김형순 (02-3145-7010)
		담당자	팀 장	이원흠 (02-3145-7012)

투자자 중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「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」 개최

1 간담회 개요

- '26.9.21.(월) 금융감독원은 주요 증권사(총 21사)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투자자 중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
 - 최근 주요 검사·점검 결과 및 내부통제 상 시사점 등을 안내 함으로써 각 회사의 준법감시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
 -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관리조치 점검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채무구조도의 제도적 안착 및 내부통제 책임성 제고를 유도

「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」 개요

- ☑ 일 시 : '26. 9. 21.(월) 10:00 ~ 11:00
- ☑ 장 소 : 금융투자협회 23층 회의실
- ☑ 참석자 : (금융감독원)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, 금융투자검사1국장 등
(업계) 금융투자협회, 21개 증권사(종투 10사, 중형 11사) 준법감시인 등
- ☑ 내 용 : ❶모두 발언(서재완 부원장보)→❷최근 주요 검사·점검 결과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상 시사점 발표→❸금융투자업자 대상 금융상품 출시 단계별 관리조치 적정성 점검 결과 발표→❹의견 수렴 順으로 진행

1. 서재완 부원장보 모두발언

- 최근 증권사들은 자본시장 발전과 더불어 큰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으며, 이와 함께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도 커진 상황
 - 더 이상 보여주기식의 투자자 보호로는 국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함
- 그럼에도 과도한 신용·미수거래 유도, 수수료·비용 전가 등 ‘증권사 배만 불리는’ 영업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며
 - 일부 거점점포에서는 위법 과당매매, 불법 임의·일임매매,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사례도 발생
- 또한, 최근 고위험 상품 설계·제조 적정성 점검 결과,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프로세스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
 - 상품 기획·심의 단계에서부터 준법감시부서가 회사 내의 ‘레드팀(Red Team)’으로서 통제·관리 역할을 ‘제대로’ 수행할 필요
-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또한 최근 시행된 책무구조도에 따라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
 - 준법감시부서가 충분한 권한 및 인적·물적 기반을 갖추고 내부통제체계를 철저히 점검·개선토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
-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중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 등 회사와의 소통·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며
 - 시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제도 개선, 가이드라인 마련* 등도 적극 추진하겠음

* 최근 광고 제도 개선, 회사채 캡티브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, 정보교류차단 제도 정비, 증권사 플랫폼(커뮤니티 등) 제도 개선 등도 추진 중

2. 간담회 논의 내용

- **(금감원)** 최근 주요 검사 결과·지적사항,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관리조치 적정성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
 - 최근(9.1.) 발표한 「광고업무 종합개선안」 도입 상황을 점검하고, 허위·과장광고가 근절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
 - 또한, 컴플라이언스 현장에서 준법감시인들이 마주하는 애로사항을 경청하고,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 건의사항 수렴
- **(증권사)** 참석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준법감시업무 수행을 통해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
 - 외형적 성장에 상응하는 수준의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, 기존 내부통제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답변
 - 책무구조도, 광고규제 등 최근 도입된 제도가 안착되도록 관리·점검을 강화하고 감독당국과도 상시 소통하겠다고 발언

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

- **(기대효과)** 금번 간담회를 통해 감독당국과 증권업계가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으며, 준법감시기능 제고 등 실무적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
- **(향후 계획)**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체계를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, 항상 시장과 소통하며 ‘현장 중심’ 감독업무를 수행해나가겠음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1. 최근 주요 검사점검 결과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상 시사점 관련

- ① **(거점점포 관련*)** 위법 과당매매, 불법 임의·일임매매, 고객 신용 정보 관리 무단조회 등 위법사례를 안내하고, 내부통제 강화 요청

* 최근 금융감독원은 '현장밀착형'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증권사 거점 점포를 대상으로 영업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 중

- ② **(상임대리인 업무)** 최근 증권사 자체점검 결과 우수 사례로 구성한 「상임대리인 업무 모범관행*」을 안내하고, 내부통제에 반영 요청

* [계약] 고객연락처·출금계좌 사전지정·등록 [주문·거래] 고객 본인확인 절차 매뉴얼화 [거래내역통보] 통지수단 관리 강화 [이메일보안] 이중로그인 및 보안프로토콜 구축

- ③ **(해외투자 관련)** 최근 다시 증가 추세인 해외투자 관련 내부통제 유의사항*을 안내하고, 투자자 보호절차를 재점검해달라고 요청

* ①KPI에 실효성 있는 투자자보호 지표 반영, ②이벤트·투자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, ③해외 현지브로커 선정·관리 강화, ④투자자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절차 합리화 등

2.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관리조치 적정성 점검* 결과 및 유의사항

* 총 5사(증권 3사·운용 2사)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에 따른 관리조치 점검

- ① **(제조·판매 책무)** 제조·판매 과정의 리스크·내부통제 공백을 사전 점검·개선토록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* 부여 필요

* [제조단계] 심의회 구성·운영 효과성 검토, 심의시 상품 리스크·이해상충여부 점검 등 [판매단계] 상품 판매절차 적정성 점검, 판매절차 위반사유 검토 및 개선책 마련 등

- ② **(소비자 보호 책무)** 출시단계 쏠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 요인 등을 사전점검하는 한편, CCO의 권한 강화* 필요

* 신규 금융상품의 제조·출시 및 성과평가체계 설정 시 CCO의 재의요구권 부여 등

- ③ **(준법감시 책무)**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현업 부서의 관리조치에 대한 2차 점검* 실시 필요

* 현업 부서의 관리조치상 미흡·개선사항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